◉ 산업통상부공고제2026-01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의 부대시설 중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입주기업체의 사업개시 신고시 관리기관이 현장 확인 외 비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의 부대시설 중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문화·체육시설 및 편의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명시하고,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종업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근 입주기업체 종업원 등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함. (안 제2조제7호)

나. 제조업체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시공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사무실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함. (안 제2조제8호라목)

다.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입주기업체의 사업개시 신고시 관리기관이 현장 확인 외 영상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9조의2제4항)

라. 산업·기술·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첨단업종 범위를 확대함. (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kikikmg@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044-203-4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